

화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 1.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5. 1. 19

다. 상 정 일 자 : 2005. 1. 21

(제1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나. 제안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동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기금의 재원 (안 제2조)
군의 출연금,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다른 기금의 출연금, 금융기관·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융자금이자수입, 자활근로수익금,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함
- 사업의 범위 (안 제3조)
자활공동체금융기관대여자금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사업자금대여, 자활지원 사업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비용, 수급자·차상위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생활안정자금대여, 자활사업의 개발연구비용 등
- 용자대상 (안 제4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등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안 제6조)
 - 대여금액 상한액 : 7천만원,
 - 대여기간 : 5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 이 자 : 연 2%(연체이자 10%)
- 수급자 등의 자활자금 대여 (안 제7조)
 - 대여금액 상한액 : 1천만원
 - 대여기간 :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이 자 : 연 2%(연체이자 10%) - 거치기간 무이자

- 융자금 상환 독촉 및 일시상환 내용 규정 (안 제9조)
-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요건 규정 (안 제10조)
- 특별회계설치 (안 제12조)
-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용태)

-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의한 기초생활 보장기금의 적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사회보장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토론자 : 박광재 위원

화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2조4호”를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구

6. 심사결과

“수정 가결”

7. 붙임 : 화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화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군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군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생활안정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영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 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의 대여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유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사업소재지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2장 기금의 운영

제5조(융자신청) ①기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자는 거주지 읍·면장, 자활후견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융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간 균등 분할상환하거나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0%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7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자금 대여) ①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의 대여금액은 1가구당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제3조제5호의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 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4. 의료비충당, 부채상환을 위한자금
5.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2년 거치 후 3년간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2%로 하되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8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분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는 재차 융자 할 수 없다. 다만 지원을 받아 운영중인 사업의 운전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융자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상환독촉 및 일시상환) ①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자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을 용자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용자금을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과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 신청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용자받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때
4. 용자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0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을 경우 그 자금과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의 차가 있을 때에는 3%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 중 이차보전이 가능한 대상금액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액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자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 신청한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장 회 계

제12조(특별회계 설치) ①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화순군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세입 · 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및 상환금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및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기타 경비로 한다.

제14조(예비비)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용한다.

제 4 장 보 칙

제16조(감면조치 등) 기금을 용자 받은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감독) 군수는 기금의 용자를 받은자에 대하여 사업의 운영 및 자금의 관리상황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폐지) 화순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용자 조례(조례 제1000호 1986.11.10)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화순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화순군 기초생활보장 기금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 화순군 저소득생 주민생활안정자금용자조례에 의하여 용자된 용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용자된 것으로 보고 용자금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